

-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(관세법 제30조) -

$$\text{수입 물품 과세가격} = A+B-C$$

A.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(관세법 제30조 제②항)

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함 (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 금액 포함)

1. 송품장(INVOICE) 가격

2. 송품장 가격 이외 실제지급금액의 구성 요소 (간접 지급 금액)

- 송품장 가격 이외에 수입 물품 가격의 일부를 별도 지급할 경우
- 구매자가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
-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
-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

B. 가산요소 (관세법 제30조 제①항)

1.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

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,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

2. 수입 물품의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

- 중개료, 수수료(구매수수료 제외)
- 수입 물품의 용기 비용
- 수입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

3.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 제공하는 물품 또는 역무의 비용 (생산지원비)

- 수입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, 구성요소,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
- 수입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, 금형, 다이스 및 이와 비슷한 물품
- 수입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
- 수입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, 설계, 고안, 공예 및 의장으로 국내 이외에서 개발된 것

4. 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

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

5. 사후 귀속 이익

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,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

C. 공제비용

실제지급금액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제 (관세법 제30조 제②항 각호)

1. 수입 후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 물품의 건설, 설치, 조립, 정비,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
2.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,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비용
3. 국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과징금
4. 연불이자